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4.10

제2판: 2003년 1월 1일

개정10: 2019년 2월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Glossary of mine action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유엔 프라자 1, 6층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0691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1 United Nations Plaza 6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0691

FAX: +(1212) 963 2498

목 차

목 차	3
머리말	4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5
1. 적용범위	5
2. 참고	5
3. 용어, 정의 및 약어	6
[A]	6
[B]	9
[C]	11
[D]	16
[E]	20
[F]	24
[G]	25
[H]	27
[I]	29
[K]	34
[L]	34
[M]	35
[N]	40
[O]	41
[P]	42
[Q]	47
[R]	47
[S]	50
[T]	55
[U]	57
[V]	58
[W]	59
개정 기록	60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1. 적용범위

본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과 여기에 연결된 지뢰행동기술서(TNMA, Technical Notes for Mine Action)와 시험평가 의정서(T&EP, Test and Evaluation Protocols)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술적인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의 요약を提供한다. 만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대체 가능한 정의가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여기에 모두 수록된다.(별도의 정의 또는 참고에 기록된 정의로 둘 다 수록함)

참고: 정의는 변경 가능한 것이며, 새로운 정의는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추가된다. 때에 맞추어 정의를 넣기 위해서 새로운 정의 및 변경된 정의는 해설되는 단어나 용어 밑에 괄호로 관련날짜를 표기한다. 다른 모든 정의는 2003년 1월 1일자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의 제2판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참고

다음의 인용표준은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의 참고란에서 보듯이 국제지뢰행동표준 본편에 있는 규정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참고란에 기록된 날짜보다 후에 나온 표준출판물의 개정 또는 수정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표준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 협정서의 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나열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란에 날짜가 없는 것은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현행의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을 유지한다.

- 1) IATG 01.40, 용어, 약어 및 정의 모음
- 2) ISO 3166, 국가와 부속 영토 명칭 부호
- 3) ISO 9000:2000, 품질경영 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 4) ISO 14000:2004, 환경경영 시스템 - 사용지침을 위한 요구사항
- 5) ISO 10241, 국제 용어 규격 - 작성 및 편집
- 6) ISO 가이드 51, 안전 측면 - 표준의 포괄적인 적용지침
- 7) ISO / IEC 가이드 2,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대한 일반 용어 및 정의 - 일반 용어
- 8) ISO / IEC 지침 2부, 국제표준 개선에 대한 방법
- 9) ISO / IEC 지침 3부, 국제표준 구조와 제도에 대한 규칙

- 10) ISO 표준 지침서, 수량 및 단위
- 11) OHSAS 18001:1999,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 - 사양
- 12) OHSAS 18002:2000,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
OHSAS 18001 실행가이드라인
- 13) ILO R164 -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권고 1981
- 14) ILO C155 -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1981
- 15) AAP-6, NATO 용어 및 정의 모음
- 16) AOP 38 탄약안전에 관한 전문용어 및 정의 모음
- 17) 대인지뢰금지협약 (APMBC,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 18)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개정 의정
서 II와 의정서 V
- 19) 확산탄금지협약 (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20) 유엔-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성(性)지침

3. 용어, 정의 및 약어

[A]

3.1 유기확산탄 abandoned cluster munitions

(2009)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서 더 이상 소유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확산탄과 자탄. 그것은 사용목적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산탄금지협약]

3.2 유기폭발물 Abandoned Explosive Ordnance (AXO)

(2005)

무력분쟁 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서 더 이상 소유자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폭발물. 유기폭발물은 도화선이나 퓨즈, 무장장치가 작동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용 목적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CCW 제5의정서)

3.3 승인 acceptance

(2005)

장비가 주문한 요청사항에 부합하고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데 타당한지 후원자 또는 후원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승인은 엄격한 품질규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4 접근통로 access lane

위험지역을 관통하여 특정 지점 또는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제거해 놓은 표지가 있는 통로

3.5 사고 accident

피해를 발생시키는 비의도적 사건

참고: OHSAS 18001:1999 에서 정의한 대로 수정

3.6 인정 accreditation

(2009)

지뢰행동단체가 안전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뢰행동 활동을 계획, 관리,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정식으로 증명하는 절차

참고: 대부분의 지뢰행동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지역단체가 인정체계를 제안할 수 있다.

참고: ISO 9000의 사용은 ‘인정’ 기관이 ‘인증 또는 등록’ 단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가 여타 단체들에게 ISO 9000 사용자격을 부여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사용법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며, 위의 주요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지뢰행동 커뮤니티에서 잘 이해된다.

3.7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보통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속해있는 조직이며, 국가인정시스템의 운영과 실행을 담당한다.

3.8 옹호 advocacy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영향이나 그로부터 오는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킬 목적을 가지고 대중적 지지나 권유, 또는 긍정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을 뜻한다.

3.9 합의 agreement

(2004)

계약의 대체 용어이며 합의에는 모든 중요한 계약내용이 포함된다.

참고: 법률적인 의미로 쓰일 경우의 정의

3.10 모든 합리적인 노력 all reasonable effort

(2013)

지뢰오염지역을 확정하고 기록하거나 또는 폭발물의 존재나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용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용어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은 기대되는 결과에 비추어 자원의 추가적 투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다.

3.11 개정 제2의정서 Amended Protocol II (APII)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의 개정 제2의정서(CCW APII).

참고: 개정 제2의정서는 모든 탐지 불가능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지뢰, 부비트랩과 기타 유사기구의 사용을 넓은 범주에서 제한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5조는 지뢰지대의 표시와 감시를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다. 제9조는 지뢰지대와 지뢰오염지역에 대한 정보의 기록이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 기술서는 그 중에서도 지뢰지대와 지뢰오염지역에 대한 정보의 기록 및 국제표준의 표지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다.

3.12 탄약 ammunitions

탄약(munition) 참고

3.13 지뢰취급방지장치 anti-handling device

지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뢰의 일부로 만들어졌거나 지뢰에 연결되어 부착되었거나 지뢰 밑에 설치된 장치로서 지뢰에 손을 대려고 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 의도적인 방해를 가할 때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APMBC)

3.14 대인지뢰금지협약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APMBC)

오타와협약 Ottawa Convention

지뢰금지조약 Mine Ban Treaty (APMBC)

참고: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완전한 금지를 규정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문서의 목적과 관련하여 협약 제5조는 지뢰지대에서의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지뢰지대 혹은 지뢰의심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와 지역주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조약이 요구하는 투명성 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3.15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 (APM)

사람의 출현, 접근, 접촉에 의하여 폭발하도록 고안된 지뢰로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능상태로 만들거나 목숨을 빼앗는다.(APMBC)

참고: 대인지뢰에는 위의 정의에 해당되는 급조폭발물도 포함된다.

3.16 대전차/대차량지뢰 Anti-Tank/Vehicle Mine (ATM/AVM)

(2018)

차량의 출현, 접근, 접촉에 의하여 폭발하도록 고안된 지뢰

참고: 사람에 대한 것과는 반대로 차량의 출현, 접근, 접촉에 의해서 폭발하도록 고안된 지뢰로 지뢰취급방지장치가 부착된 지뢰는 대인지뢰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대전차/대차량지뢰에는 위의 정의에 해당되는 급조폭발물도 포함된다.

3.17 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명확하게 규정된 과제 및 시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

참고: 응용연구의 주된 목적은 비용, 시간, 리스크와 같은 정해진 변수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용의 타당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3.18 장전된 armed

(2009)

지뢰 또는 폭발물 도화선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적절한 동력으로 작동하거나 발사될 수 있는 상태

3.19 심사 audit

(2009)

자원의 경제적 효율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산보호, 재정 및 기타 정보의 신뢰도, 규정 및 규칙, 확정된 정책의 준수,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조직의 구조, 시스템,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B]

3.20 전장 battlefield

(2007)

불발탄(UXO) 및 유기폭발물(AXO)을 포함한 전쟁잔류폭발물(ERW)이 발견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적지와 방어진지 및 공중폭격 또는 살포 자탄이 버려졌거나 발사, 투하된 지대이다.

3.21 전투지역제거 Battle Area Clearance (BAC)

(2005)

지뢰 이외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의한 위험제거

3.22 기준표지 benchmark

(2004)

인도적 지뢰제거 상황에서 이 용어는 표지 또는 기록이 있는 위험요인 또는 위험한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참고점을 말하며, 그것은 보통 위험지역 바깥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should).

참고: 참고점이 위험지역의 둘레가 매우 가까울 경우에는 기준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23 실전탄유닛 Bomb Live Unit (BLU)

(2004)

자탄 종류의 명명법의 하나, 예) BLU26 또는 BLU97.

3.24 소형폭탄 bomblet

소폭탄(submunition) 참고

3.25 부비트랩 booby trap

고의로 사상자를 유발하도록 설치하여 놓은 폭발성 또는 비폭발성을 가진 장치나 물질이며, 이는 명시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물체를 건드리거나 평범하게 안전한 동작을 행할 때 작동한다. (AAP-6)

3.26 경계선 boundary lane

위험지역 둘레의 지뢰가 제거된 통로

3.27 박스 box

(2005)

지뢰탐지건의 수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각지역

참고: 박스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로 10m×세로 10m이나 다른 크기로 정할 수도 있다.

3.28 브리핑지역 briefing area

(2004)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지뢰제거 현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초입에 만든 확실히 식별 가능한 통제지점

참고: 브리핑지역은 통제지점(주차장, 응급처치지점, 폭발물 저장구역,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떨어진 장소)의 위치를 보여주며, 방문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곳으로, 브리핑 목적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로서 지뢰지대의 정보 및 최근의 제거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3.29 소각장 burning site

(2005)

소각에 의한 확산탄 및 폭발물의 파괴가 허가된 장소

[C]

3.30 취소지역/취소토지 cancelled area/cancelled land (m²)

(2009)

위험의심지역/위험확인지역(SHA/CHA)에 대한 비기술조사의 결과에 따라 폭발물 오염의 증거가 없는 곳으로 결론이 난 지역

3.31 확산탄금지협약 CCM (the 2008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09년)

본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한다. 조약의 여러 조항들은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의 확산탄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다루고 있다.

3.32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the 1980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2007)

1980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참고: 2001년 12월 21일 개정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1980년 협약. 이것은 다섯 부문 또는 ‘의정서들’로 구성되며 그중 두 개만이 지뢰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개정 제2의정서는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를 다루고, 제5의정서는 전쟁잔류폭발물(ERW)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3.33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Committee European Normalisation)

유럽표준화위원회는 규격화를 위한 유럽기구이다.

참고: 유럽표준화위원회의 목적은 유럽에서 세계기관단체들과 유럽 파트너들의 연결을 통하여 자발적인 기술의 일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표준(EN으로 지칭됨)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확실하게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축적물이다.

3.34 유럽표준화위원회 워크숍합의서 CWA (CEN Workshop Agreement)

(2007)

유럽표준화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의된 협정으로 이것은 해당 내용에 책임을 지는 식별된 개인 및 단체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3.35 인증위원회 certification committee

유엔지뢰행동기구(UNMAS)가 임명한 위원회로서 현장에서 얻어진 유엔품질보증 모니터의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인증 지침에 의하여 지뢰제거작업종합평가(GMAA) 절차에 따라 영향요소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참고: 국제사회에 의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종합평가의 영향요소에서 발견된 것을 승인하는 일은 유엔인증위원회의 인증에 달려 있다.

3.36 제거 clearance

(2018)

지뢰행동 상황에서 이 용어는 국가지뢰행동기구 및 업무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깊이 또는 기타 합의된 수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폭발성 물질을 제거 또는 파괴하는 임무 및 활동을 말한다.

3.37 제거지역 cleared area

제거된 토지 cleared land (m²)

(2013)

정해진 깊이까지 모든 폭발물 위험을 제거 또는 파괴하여 지뢰의 위험이 사라진 지역

3.38 제거선 cleared lane

안전선 safety lane

경계선을 제외하고, 조사 및 제거팀에 의하여 지뢰제거를 위해 만든 국제표준에 따라 제거가 완료된 일정한 선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이것은 위험지역 외부의 접근로 또는 위험지역 내부

의 교차선 및 검증선을 포함할 수도 있다.

3.39 확산포탄유닛 Cluster Bomb Unit (CBU)

항공기에 장착된 폭탄으로서 투발기와 자탄으로 이루어져 있다(AAP-6).

적재 및 방출되는 자탄의 종류로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투과폭탄(활주로 방해), 파편폭탄 등이 있다.

3.40 확산탄 cluster munition

(2009)

참고: 확산탄에 대한 다음의 정의는 확산탄금지협약에서 정의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확산탄은 ‘전쟁잔류폭발물’의 포괄적인 정의에 포함된다.

확산탄은 20kg을 넘지 않는 폭발성 자탄을 분산 또는 방출시키도록 고안된 재래식 탄약 및 그 탄약에 적재되는 폭발성 자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CCM).

다음의 항목은 확산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섬광, 연막, 불꽃 또는 채프 금속이나 도금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조각을 방출하도록 고안된 탄약이나 자탄 또는 방공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탄약
- 2) 전기 또는 전자에 관련된 효과를 내도록 고안된 탄약이나 자탄
- 3) 지역을 막론한 무차별적 피해와 불발 확산탄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탄약
 - (i) 각 탄약에 10개미만의 자탄 적재
 - (ii) 각 자탄의 무게가 4kg 이상
 - (iii) 각 자탄이 오직 하나의 목표물을 감지하여 발동하도록 고안됨
 - (iv) 각 자탄에 전자자폭시스템이 내장
 - (v) 각 자탄에 스스로 활성화되지 않는 전자장치 내장

3.41 확산탄 오염지역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

(2009)

확산탄 잔류물들이 남아있다고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지역.

3.42 협력 collaboration

지뢰행동의 장비조달 상황에서 이 용어는 둘 이상의 단체가 공동장비를 조달하는 데에만 적용

되는 활동을 뜻한다.

3.43 기폭스위치 command

(2018)

기폭순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동시키는 스위치의 유형

3.44 기성품 commercial off the Shelf(COTS)

지뢰행동장비의 조달 상황에서 이 용어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고, 도입하기 전에 약간의 조율 외에 추가적 개발 및 개선이 필요 없는 장비를 말한다.

3.45 공용성 commonality

지뢰행동장비의 조달 상황에서 이 용어는 개인 또는 단체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공통의 절차 및 장비를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3.46 지역사회소통 community liaison

지역사회지뢰행동소통 참고

(2009)

폭발물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뢰 또는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와 그 영향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보고하는 연결체계를 만들고, 위험감축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락. 지역사회소통은 지뢰행동 작업의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요청과 우선순위가 중심이 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지역사회 소통은 정보의 교환을 기반으로 하여, 지뢰제거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킨다(지뢰제거 전, 지뢰제거 중간, 지뢰제거 후). 이런 방법을 통해 지뢰제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모든 그룹의 최대한 참여를 확보하는 포용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그룹 참여는 프로젝트의 공동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평가에 모두 적용된다.

참고: 지역사회 소통은 또한 개인 및 지역의 태도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잠정적 안전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다. 이는 위험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47 호환성 compatibility

지뢰행동 장비의 조달 상황에서 이 용어는 장비 또는 물건의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 또는 그 부속물의 기능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존재하거나 기능하는 것이다.

3.48 개념정립 concept formulation

조달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때가 초기 운영요구사항기술서(SON)에 관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3.49 위험확인지역 Confirmed Hazardous Area (CHA)

(2013)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폭발물오염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을 말한다.

3.50 오염지역 contaminated area

(2009)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폭발물의 존재가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말한다.

3.51 계약 contract

(2009)

양자 혹은 그 이상의 개체들 사이에 특정 조건을 가지고 맺는 법적구속력 있는 공식적인 합의서로서, 여기에는 예상되는 이익을 얻는 대가로 어떤 것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3.52 계약자 contractor

(2009)

정부기관, 비정부단체 또는 영리단체 등 지뢰관련 사업을 수행하기로 계약한 조직이다. 전체계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계약상의 단체를 ‘주계약자’라고 한다. 주계약자가 전체계약에 부속되는 각 구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다른 단체나 개체를 ‘하도급업체’라고 한다. 하도급업체는 주체가 아닌 주계약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53 통제지역 또는 통제지점 control area or point

(2004)

지뢰제거 현장에서 방문객 및 근무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모든 지점과 지역

3.54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시스템의 성능과 그것의 전체 가동기간의 비용 사이의 비교평가

3.55 실비정산계약 cost-plus contract

(2004)

계약자가 특정범위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환급받고 추가적인 일시금 또는 상환 가능한 비용의 고정비율 만큼 환급받는 계약

3.56 급조폭발물대응 counter IED (C-IED)

(2018)

급조폭발물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정부의 대비책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대응활동으로 구성되는 바, 네트워크 공격, 폭발장치 해제, 군사적 대비이다. 군사적 대비와 폭발장치 해제는 인도적 지뢰행동과 관련이 있으나 네트워크 공격은 ‘중립성’을 중시하는 인도적 지뢰행동 커뮤니티의 입장과 상치된다. 따라서 급조폭발물대응은 지뢰행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3.57 중대부적합 critical non-conformity

(2004)

주어진 지뢰제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검사실시중에 1.0m² 단위의 토지가 규정에 어긋남을 말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은 ‘부적합’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

- 1) 폭발물의 발견
- 2) 국가지뢰행동기구(NMAA)에 의해 규정된 다른 중대한 부적합

[D]

3.58 오염제거 decontamination

현장시험을 준비할 경우에 사용되는 시험물품, 도구 및 기타 장비 등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 (ADS에서만 사용하는 정의)

3.59 폭연(爆燃) deflagration

(2009)

보통 열전도율을 통해 음속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점화를 설명하는 기술적 용어 (뜨거운 연소물질은 찬 물질의 다음 층을 가열하고 그것을 점화시킨다(AOP38)).

3.60 비군사화 demilitarisation

(2009)

탄약의 군사적 잠재능력을 제거하거나 또는 무효화하는 행위로서, 비무장화는 군용물품을 비군사적 환경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필요한 단계이다(AOP 38).

탄약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드는 과정

3.61 지뢰제거사 deminer

지뢰제거현장에서 지뢰제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격을 갖춘 남성 또는 여성

3.62 지뢰제거 demining

인도적 지뢰제거 humanitarian demining

폭발물 위험의 제거를 유도하는 모든 활동으로 여기에는 기술조사, 매핑(mapping), 제거, 표지, 지뢰제거사후기록, 지뢰행동 지역사회소통, 제거된 토지의 이양 등이 포함된다. 지뢰제거는 비정부단체, 기업, 국가지뢰제거팀 또는 군부대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지뢰제거는 지뢰지대의 응급상황 및 제거방법의 발달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폭발물제거는 지뢰제거과정의 단지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지뢰제거는 지뢰행동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지뢰제거와 인도적 지뢰제거라는 용어는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3 지뢰제거사고 demining accident

폭발물인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지역과 연루되어 지뢰제거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참고: 지뢰사고)

3.64 지뢰사고 대응책 demining accident response plan

각각의 지뢰제거 작업장을 위해 개발한 문서화된 계획으로, 사고자를 지뢰사고 지점으로부터 적절한 치료시설 또는 외과적 치료시설로 이동시키는 데에 적용되는 상세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3.65 지뢰제거기계 demining machine

(2009)

지뢰행동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제거 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단위를 말한다.

3.66 지뢰제거사건 demining incident

폭발물 위험과 연루되어 지뢰제거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참고: 지뢰사고)

3.67 지뢰제거단체 demining organisation

정부, 비정부단체, 군대 또는 기업 등과 같은 단체로서, 지뢰제거 계획 또는 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지뢰제거단체는 주계약자, 도급업자, 컨설턴트 또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3.68 지뢰제거예하조직 demining sub-unit

(2004)

기술조사, 인력지뢰제거, 폭발물 처리 또는 동물탐지팀(ADS)의 사용과 같이 지뢰제거 활동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지뢰제거단체의 부속조직

3.69 지뢰제거요원 demining worker

(2009)

지뢰제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 고용인

3.70 지뢰제거현장 demining worksite

(2004)

지뢰제거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

참고: 지뢰제거현장은 조사, 제거 및 폭발물처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여기에는 제거작업을 통하여 폭발물로 식별되어 제거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앙처리장도 포함된다.

참고: 지뢰제거현장과 관련된 조사에는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위험 및 위험가능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종합조사가 포함된다.

3.71 폭파 demolition (dml)

화력, 수력, 폭발물, 기계류 또는 기타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조, 시설이나 물질을 파괴하는 것

3.72 폭파구역 demolition ground

폭발에 의해 탄약 및 폭발물을 파괴하도록 허가된 장소.

3.73 현장파괴 destroy (destruction) in situ

현장 폭파 blow in situ.

(2009)

폭발물 등을 옮기지 않은 채, 그것이 발견된 장소에서 파괴하는 것으로, 주로 대상물에 폭발성 화약을 붙여서 폭발시킨다.

3.74 파괴 destruction

(2004)

탄약과 폭발물을 더 이상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없는 불활성 상태로 최종 전환하는 과정

3.75 파괴조직 destruction organisation

(2004)

비축폭발물의 파괴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 군대 또는 기업체 등의 조직을 말하며, 파괴조직은 계약자, 하도급업자, 컨설턴트 또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3.76 탐지 detection

(2004)

인도적 지뢰제거 상황에서 이 용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폭발물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3.77 기폭장치 detonator

폭발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민감한 폭발물이 들어있는 기구

3.78 장전해제 disarm

기폭장치나 점화기를 제거하여 해당지뢰 또는 폭발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화체인에서 하나 이상의 고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3.79 투발기 dispenser

(2009)

자폭탄을 적재하였다가 그것을 확산, 방출시키는 용기 또는 장치

3.80 폐기/파괴장 disposal/destruction site

(2009)

폭파 및 소각을 통해 탄약과 폭발물 등을 폐기하도록 허가된 장소

3.81 다이나이트로톨루엔 DNT (Dinitrotolulene)

(2005)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rinitrotoluene,TNT)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류물이며,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의 부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해산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보통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폭발장치에서 다양한 분량으로 존재한다. 다이나이트로톨루엔의 증기압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보다 훨씬 높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보다 다이나이트로톨루엔을 검출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3.82 연습탄 drill munition

(2005)

훈련, 전시 또는 교육 목적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비활성 상태의 탄약 복제품

3.83 내구성 durability

명시된 조건아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물질의 능력으로, 내구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능이다.

참고: 내구성의 판단에는 기능저하, 부식, 균열, 층간박리(剝離), 열 충격, 마모 및 이물질에 의한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포함된다.

[E]

3.84 효율성 efficiency

(2009)

지뢰행동의 평가 상황에서 이 용어는 기금, 전문성, 시간 등 투입된 경제적 자원이 산출물 및 성과 등의 결과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85 효과성 effectiveness

(2009)

지뢰행동의 평가 상황에서 이 용어는 개입의 목적이,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말한다.

3.86 보호복장 ensemble

보호수단으로 착용하도록 고안된 보호의류 총체

3.87 환경 environment

대기, 수질, 토지, 천연자원, 동식물군, 인적자원 및 그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수행하는 곳의 주변상황 (ISO 14001:2004[E])

3.88 환경적 측면 environmental aspects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요소 (ISO 14001 :2004[E])

3.89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factors

지뢰제거 작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관련된 요소(예를 들면, 바람, 비, 기온, 습도, 고도, 일조량, 초목 등)들로서, 지뢰에서 발산되는 냄새의 이동, 특정 냄새의 탐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작업자와 탐지건의 능력 등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ADS에서만 사용하는 정의)

3.90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

(2009)

환경적 관점에서 조직이 긍정적, 부정적 또는 전체적, 부분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끼쳐서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 (ISO 14001:2004[E])

3.91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2007)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이전에 지뢰행동의 생물물리학적, 사회적 및 기타 연관된 환경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3.92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EMS)

(2006)

조직의 관리체계 중 일부로서, 이는 조직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다.(ISO 14001:2004[E])

3.93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2006)

조직의 최고 경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현된 환경지침에 따라 세워진 조직의 전체목적과 방향

3.94 장비 equipment

사람이 하는 활동, 업무수행 및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및 전자 시스템

3.95 유럽표준화기구 European Normalisation (EN)

(2005)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참고

3.96 평가 evaluation

(2009)

장비의 시험평가(T&E) 상황에서 이 용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장비 또는 시스템의 양적, 질적 효과 및 가치를 장비가 사용될 환경 내에서 확립하기 위해 어떤 결과 또는 일련의 결과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 설계, 구현 및 결과에 대한 가능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평가의 목적은 목표, 개발 효율성, 효과, 영향 및 지속가능성의 달성여부 및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가는 신뢰할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출된 결과가 원조자 및 수원자 모두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DAC:1991)

참고: 개발원조평가원칙(OECD-개발원조위원회), DAC, 1991의 정의

프로그램 상황에서 이 용어는 어떤 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장점이나 가치를 가능한 한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참고: ‘객관적으로’ 라는 단어는 다른 자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주된 이해당사자로서는 남녀 수혜자 모두를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점을 조정하면서 균형 잡힌 분석을 도출해야할 필요를 나타낸다.

참고: 평가는 전략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참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의(UNICEF 정책과 프로그래밍 설명서)

3.97 발굴 excavation

(2009)

땅 표면하의 폭발물의 존재를 탐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흙을 옮기는 곳에서 지뢰제거 프로세

스로 사용되는 절차

3.98 폭발성 물질 explosive materials

지뢰제거단체가 사용하는 물품 혹은 보조물을 말하며, 기폭장치와 뇌관 등 폭발물질을 포함하거나 폭발수단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3.99 폭발물 Explosive Ordnance (EO)

(2018)

다음의 탄약에 대한 지뢰행동의 대응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뢰
- 확산탄
- 불발탄
- 유기폭발물
- 부비트랩
- 기타 폭발물 (CCW APII에 의한 정의)
- 급조 폭발물*

참고: 활발한 교전행위가 중단된 지역에서 인도적 지뢰제거가 진행될 때, 지뢰, 부비트랩 또는 기타 폭발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급조 폭발물은 지뢰행동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

폭발물 처리 Explosive Ordnance Disposal(EOD)

(2005)

폭발물의 탐지, 식별, 분석평가, 안전조치, 복구 및 폐기. 폭발물처리는 다음의 경우에 수행된다.

- 1) 지뢰제거 작업 중에 정례적인 작업으로 폭발물이 발견되었을 때
- 2) 위험지역 밖에서 발견된 전쟁잔류폭발물(한 개나 또는 특정 지역 내 다수)을 폐기할 때
- 3) 노후화, 손상 및 폭발시도에 의해 위험해진 폭발물을 폐기할 때

3.100 전쟁잔류폭발물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2005)

불발탄(UXO) 및 유기폭발물(AXO)(CCW protocol V)

3.101 폭약 explosives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가스와 열 형태로 에너지를 급히 발산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

3.102 폭발성 자탄 explosive submunition

(2009)

확산탄에 의해 분산 또는 방출되며, 접촉 전후에 장약을 터뜨려 폭발하도록 고안된 재래식 탄약

[F]

3.103 미방출 확산탄 failed cluster munition

(2009)

발포, 투하, 발사, 투적을 통하여 폭발성 자탄을 분산 또는 방출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못한 모탄(CCW)

3.104 실패 failure

시스템, 장비, 부품 또는 부속부품이 사전에 지정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건

참고: 원인의 실패, 정도의 실패, 적절성의 실패, 의존성의 실패 및 책임의 실패로 분류할 수 있다(may).

3.105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FS)

기술,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과제와 산출의 기획보고서의 타당성을 찾기 위한 조사

3.106 현장편집자 field editor

현장의 조사자가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가독성 및 명확성의 검증을 주로 책임지는 개인

참고: 현장편집자는 조사팀과 함께 긴밀하게 작업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팀이 평가받는 커뮤니티와 같은 인근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사가 완결된 후에 신속하게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107 고정가격계약 fixed price contract

(2004)

계약자가 합의된 기간 동안 특정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정량의 자산(지뢰제거팀, 동물탐지부대 또는 기계장비)을 제공하고 고정액을 지급받는 계약으로서, 계약자가 제공하는 업무, 물자 및 서비스는 정해진 금액에 모두 포함된다.

3.108 불가항력 force majeure

(2009)

계약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 당사자 모두를 법적 책임과 의무로부터 근본적으로 면제시키는 계약서상의 공통조항

3.109 완전개발 Full Development (FD)

모든 생산과정을 포함하는 절차로서, 실험과 시험을 거쳐 상품화하기 위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최종적인 상세설계를 완성한다.

3.110 퓨즈 fuze

연쇄폭발을 일으키는 장치 (AAP-6)

[G]

3.111 성(性) 분석 gender analysis

(2009)

남성과 여성의 다른 역할 및 자원에 대한 다른 접근과 통제에 관한 상이성 연구.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그들의 기회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개선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3.112 성(性) 평등 gender equality

(2009)

남성과 여성의 권리, 책임 및 기회는 동등하며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심사, 우선순위 및 필요도 모두 평등하게 고려됨을 의미한다.

3.113 성(性) 주류화(또는 성 관점의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or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2009)

법제화, 정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 및 모든 수준에서 어떤 계획된 활동을 남성과 여성이 가진 다른 함의(含意)를 가지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으로서, 여성과 남성 각각의 관심과 경험을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통합적인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UNMAT 2005]

3.114 성(性) 인지 gender sensitive

성평등 참고

(2009)

지뢰행동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방식은 지뢰가 남성과 여성,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성인지적 지뢰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을 두는 방식으로 지뢰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3.115 지뢰행동종합평가 General Mine Action Assessment(GMAA)

(2009)

종합적인 정보목록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 종합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목록에는 폭발물오염의심지역에 관한 모든 제출되거나 의심되는 위치, 폭발위험의 크기와 종류 및 토양의 지역적 특징과 초목 및 기후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 국가에 있어서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문제의 규모와 영향력에 관한 평가도 포함된다.

3.116 일반요구사항 generic requirement

제안된 장비의 모든 계획된 사용에서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수행과 환경적 성격

3.117 지리좌표참조 georeferencing

일반적인 장소에 기초하여 상이한 데이터를 단순비교, 편집,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픽 좌표나 간접참조 코드를 데이터 도표에 추가하는 과정

3.118 지리(지역공간)정보시스템 Geographical (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GIS)

지리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의 모든 양식을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업데이트, 조작, 분석 및 배열하기 위하여 고안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리 데이터 및 인력의 체계화한 집합

참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지리적 분포와 연관성에 기초한 데이터의 다수의 층을 지리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고성능의 도구들을 결합하여 정보의 다양한 층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3.119 지면준비 ground preparation

(2009)

후속의 지뢰제거 작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사, 초목, 금속오염물질, 단단한 토양 등 제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확인 또는 식별된 위험지역에서 기계로 하는 지상의 준비

3.120 집단면담 group interview

(2009)

피해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조사할 사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주요 정보제공자 집단과 진행하는 공식적 면담행위

[H]

3.121 이양(移讓) handover

(2009)

수혜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또는 토지사용자를 대신하는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이전에 폭발물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의심되었으나 이후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또는 제거작업을 통해 위험성이 해소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된 토지를 수령 및 수용하는 과정

3.122 이양(移讓) 증서 handover certificate

(2009)

폭발물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의심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의심이 해소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된 토지의 이양사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3.123 하드웨어 hardware

물리적 크기와 질량을 가진 장비, 반대말은 소프트웨어

3.124 피해 harm

사람의 신체적 부상이나 건강손상 또는 재산이나 환경의 손상 (ISO Guide 51:1999[E])

3.125 피해사건 harmful event

(2004)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를 받은 사건 (ISO Guide 51:1999[E])

3.126 위험 hazard

피해의 잠재적 원인 (ISO Guide 51:1999[E])

3.127 위험지역 hazard(ous) area

오염지역 참고

(2009)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역의 총칭

3.128 위험표지 hazard marker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 지역의 경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물체들로, 위험표지(hazard sign)과는 별개임. 위험표지는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지정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shall).

3.129 위험표지시스템 hazard marking system

일반인들에게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에 대한 주의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의 조합으로 표지판 및 방벽 등. 이 시스템에는 표지판이나 표지의 사용 또는 물리적 장벽의 설치가 포함될 수 있다(may).

3.130 위험표지 hazard sign

영구적으로 제조된 표지판은 표시시스템의 일부로 설치되었을 때, 일반인들에게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3.131 위험상황 hazardous situation

(2004)

인명, 재산 또는 환경이 한 가지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ISO Guide 51:1999[E])

3.132 건강 health

(2004)

업무와 관련하여 이 용어는 단순히 병약함이나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 역시 포함하며, 이는 작업에서의 안전 및 위생에 직결된다. (ILO C155)

3.133 고위험지역 high risk area

(2009)

위험확인지역에 전형적으로 매설된 확인 가능한 지뢰지대 또는 비기술조사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이 매설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지역

3.134 사제폭발물 Home Made Explosive

(2014)

상업적으로 살 수 있는 재료들을 조합하여 폭발물질을 만들어 낸 합성물

3.135 인도적 지뢰제거 humanitarian demining

지뢰제거 참고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지뢰제거와 인도적 지뢰제거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용어이다.

3.136 인도적 원칙 humanitarian principles

(2019)

인간성,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인도적 활동을 안내하는 일련의 원칙

참고: 지뢰행동에서의 보다 자세한 인도적 원칙에 관해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 01.10 (6.2) 참고. 이 원칙들은 유엔결의안 46/182 및 58/114에서 통과되었고, 인도적 활동의 토대로 간주된다. (UNOCHA)

II

3.137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s (IATG)

(2012)

참고: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탄약 등의 보관, 이전 및 물품폐기의 측면에서 지뢰제거조직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는 폭발이후 폭발물 저장장소의 잔류폭발물처리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한다.

3.138 급조폭발물 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

(2013)

폭발성 물질, 파괴성, 유독성, 치사성 및 불꽃을 일으키는 소이제(燒夷劑) 특성이 있는 물질, 또는 파괴, 손괴, 주의분산 및 교란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임의로 제조하거나 설치한 폭발물. 군용품물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군사적 구성물로 만든다. (IATG 01.40:2011)

참고: 급조폭발물은 그 구조에 따라 지뢰, 부비트랩 및 다른 형태의 폭발물 등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런 장치들은 수작업으로 급조한 현지 제조의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형태의 폭발물을 말할 수도 있다.

3.139 급조폭발물 처리 IED Disposal (IEDD)

(2014)

급조폭발물(IED)의 위치파악, 식별, 안전조치 및 최종적 폐기처리

3.140 영향 impact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폭발물위험 및 위험지역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나 피해위험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고통의 수준을 말한다.

참고: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 1) 지역사회 내 폭발물 위험의 존재
- 2) 도로, 시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사용과 관련된 건디기 힘든 위험
- 3) 농업용지, 수자원 등의 사용과 같은 생계활동과 관련된 건디기 힘든 위험
- 4) 최근 2년 간 발생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피해자 수

참고: 지뢰행동평가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일차적, 이차적,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최종성과물’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may).

3.141 무영향 impact free

(2004)

아직 지뢰가 존재하나 지뢰지대가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용어. 예를 들면 지뢰가 외딴 곳에 표시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참고: 대부분의 경우 ‘무영향’은 정지상태를 의미하는 것, 즉 어느 한 시점에서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hould). 사회경제적 패턴의 변화는 인구의 이동을 야기하여 전에 없던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과의 접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42 영향조사 impact survey

(2009)

지뢰행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획과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실제적 존재 또는 인식 가능한 존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

3.143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IMSMA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2007)

참고: 유엔이 지원하는 현장의 프로그램에서 얻은 중요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만든 유엔이 선호하는 정보시스템.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저장, 보고, 정보 분석,

프로젝트 관리활동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의 주된 사용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지뢰행동센터의 실무자들에 의해 사용되지만, 이 시스템은 또한 모든 차원에서 지뢰행동계획과 지뢰 제거단체의 사업수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3.144 사건 incident

(2004)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

3.145 비활성 inert

폭발물, 발화물, 최루제, 방사능, 화학물질, 생물학적 성분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나 독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탄약

참고: 비활성 탄약은 반드시 교육목적을 위해 제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형탄약과는 다르다. 모든 위험성분 및 물질을 제거하는 안전조치작업 및 기타 관련과정을 마친 불활성 상태가 된 탄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위험하거나 폭발성 있는 성분 및 물질의 주입 및 장착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3.146 비공식 지뢰제거 informal demining

(2009)

보통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이웃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는 자립적 지뢰 및 전쟁잔류 폭발물의 제거와 위험지역 표시. 주로 자구적 술선행위 또는 자발적 지뢰제거로 묘사되며, 이런 비공식 지뢰제거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지뢰행동체계의 밖에 있거나 그것들과 평행선상에 있다. 공식지뢰행동체계는 그중에 유엔, 국내외적 비정부단체, 기업, 정부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군사적 지뢰제거 또는 인도적 지뢰제거이다.

참고: 비공식 지뢰제거는 때로 마을지뢰제거라고도 한다.

3.147 검사 inspection

(2004)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찰, 측량, 검사, 시험, 평가 또는 측정 그리고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것들을 특화시킨 요구조건과 비교하는 것

3.148 검사기관 inspection body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신하여 무작위 표본추출 또는 다른 합의된 적합한 검사법을 통해 지뢰 제거 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단체

3.149 보험 insurance

(2009)

별도로 정한 상황에서 재산 또는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사전에 정해 놓은 수준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약정

참고: 보험에는 제3자의 책임보상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적절한 의료, 사망 및 장애보험이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참고: 이런 보험은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반드시 보험 중개인 또는 보험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보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자가 보험(문서)제도가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150 통합적 지뢰행동과 개발 integrated mine action and development

(linking mine action and development)

(2009)

- 1) 특히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이 분쟁후의 재건과 발전을 저해하는 곳에서 지뢰행동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 2) 지뢰행동단체들과 협력하여 지뢰피해를 입은 공동체 및 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개발행위자들의 노력

3.151 (토지)사용목적 intended use(land)

지뢰제거작업에 따른 토지사용

참고: 계획된 사용: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제품, 절차 또는 서비스의 사용
(ISO Guide 51:1999[E])

참고: 토지사용계획이 제거작업의 세부사항 및 제거작업의 인계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3.152 상호교환성 interchangeability

지뢰행동장비의 조달상황에서, 이 용어는 두 개 이상의 장비품목이 성능 및 내구성에서 같은 기능적,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약간의 조절을 제외하고는 적합성 및 성능을 고려할 필요 없이 또 품목 자체 또는 인접품목을 변경하지 않고 서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53 중간지점 intermediate point

(2004)

50m 이상 떨어진 전환점들 사이에 사용되는 조사표지

3.154 국제지뢰행동표준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IMAS)

유엔이 지뢰행동에서 안전과 품질,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발전시킨 문서로서, 이것은 지뢰행동에 지침을 제공하고 원칙을 확립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적 요구사항과 사양을 규정한다.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계획과 프로그램의 후원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합의된 수준의 효과 및 안전을 달성하고 실증하도록 장려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하기도 하는 기준들을 제공한다.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중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공통언어를 제공하며 또한 포맷과 규칙을 권고한다. 이런 정보교환은 다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도 유용하며, 자원의 동원, 우선순위결정 및 운영을 돕는다.

3.155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130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가기구의 세계적 연맹. 국제표준화기구의 역할은 ISO표준과 지침으로 발간되는 국제적 협정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비정부기구이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되는 표준은 강제성이 없다. 비록 많은 국가들이 주로 건강, 안전, 환경에 관련한 사항들을 자국의 규제체계의 일부로 채택해왔으나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인간 활동의 전체를 다루며 지뢰행동에 제공되는 많은 과제와 프로세스는 하나의 관련 표준을 가진다.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및 지침 목록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일람표 [www.iso.ch/info/catinfo/html]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 개정된 지뢰행동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및 지침과 호환되도록 개발되었다. ISO 체계와 언어를 채택하면 도면의 일관성,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사용을 포함해 ISO 표준 및 가이드에 익숙한 국제, 국가 및 지역 조직이 더 많이 승인하는 등의 상당한 장점이 있다.

3.156 진입장비 intrusive machine

(2007)

지뢰행동 상황에서, 이 용어는 위험지역 안에서 작업하도록 고안된 기계를 말한다. 반면에 비진입장비라는 용어는 지뢰제거지역 또는 안전한 지역에서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기계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을 말한다.

3.157 투자평가 investment appraisal

지출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어떤 방법이 비용 대비 가장 최선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사정하는 과정

[K]

3.158 핵심정보원 key informants

(2003)

지역사회와 주변의 위험지역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

참고: 주요 정보제공자는 지역사회 유지, 지뢰피해자, 교사, 종교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L]

3.159 최루탄 lachrymatory ammunition

최루탄에는 단기적으로 눈물이 나게 하거나 눈에 염증을 일으켜 장애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화합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3.160 토지해제 land release

(2013)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비기술 조사, 기술 조사 및 제거작업을 통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모든 존재 및 의심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은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shall).

3.161 합의서 letter of agreement

(2004)

모든 세부사항을 넣지는 않지만 계약의 필수사항을 기록한 계약서의 단순한 형태로서, 이것은 정식계약에 앞선 문서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정식 계약서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3.162 면허 licence

(2004)

지뢰행동 상황에서, 이 용어는 어떤 시설의 수용력 및 능력을 인정하여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폭파장소는 폭발물의 일정 한도의 허락을 위하여 면허를 받고, 폭발물 저장소는 특정 탄약의 종류와 분량의 허락을 위하여 면허를 받게 된다. 지뢰제거단체는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하여 위임된 인정기관으로부터 단체인정 또는 작업인정을 받는다.

3.163 개발연계지뢰행동 Linking Mine Action with Development (LMAD)

(2009)

통합적 지뢰행동과 개발 참고

3.164 지역요구사항 local requirement

지역의 환경상태, 작업절차 및 작업요건을 반영하여 제안된 장비의 성능과 특징

3.165 탄약처리 logistic disposal

(2004)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축무기로부터 탄약과 폭발물을 제거하는 일을 말하며, 반드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탄약처리에는 안전처리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166 로트면적 lot size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검사를 위해 제공된 지역으로 제거된 토지가 1.0m²의 단위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M]

3.167 탄약고 magazine

(2013)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탄약고라는 용어는 폭약창고와 같이 폭발성 물질의 저장을 위해 허락된 건물, 구조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IATG 01.40)

3.168 정비성 maintainability

(2009)

명시된 사용조건에 따라 장비, 부품 또는 부속품들이 특정 상태로 유지되거나 복원되는 능력. 이것은 특정 기술수준을 보유한 담당자가 명시된 조건하에서 규정된 절차와 자원을 사용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169 표지 marking

위험한 지점 또는 위험지역의 경계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런 수단들의 결합. 이것은 표지판의 사용, 색칠한 표지 등 물질방벽의 설치가 포함될 수 있다.

3.170 표지체계 marking system

위험 또는 위험지역 표시를 위해 합의한 규정

3.171 기계지뢰제거 작업 mechanical demining operations

(2007)

지뢰제거 작업을 위해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의 기계도구가 장착된 하나의 장비, 여러 도구가 장착된 하나의 장비 또는 여러 도구가 장착된 여러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3.172 기계공구 mechanical tools

도리깨, 경운기, 체, 굴림대, 굴착기, 쟁기, 자석 등 기계에 부착된 작업 도구. 단일 기계는 고정되거나 호환될 수 있는 여러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3.173 의료지원요원 medical support staff

(2009)

사고로 인해 지뢰제거요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및 치료할 수 있도록 배치 및 훈련되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뢰제거단체의 남성 및 여성 인력

3.174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국제법상의 형식적 권리와 의무의 제정이 아닌 구속력이 없는 형태의 중요합의사항을 표현하고자 할 때, 상황 또는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문서

3.175 지뢰 mine

흙 및 기타 지표면의 아래, 위 또는 근처에 배치시켜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 근접 또는 접촉에 의해 폭발하도록 고안된 탄약 (APMBC)

3.176 지뢰사고 mine accident

지뢰제거현장이 아닌 곳에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된 사고

지뢰제거사고 참고

3.177 지뢰행동 mine action

(2009)

불발 자탄을 포함하여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

참고: 지뢰행동이란 단순히 지뢰제거만이 아니다. 지뢰행동은 사람과 사회에 관한 일이며, 그것들이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오염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일이다. 지뢰행동의 목적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그에 따라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 사회 및 보건의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수용될 수 있다. 지뢰행동은 다음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다섯 가지의 활동그룹으로 구성된다.

- 1) 지뢰위험교육 (MRE)
- 2) 인도적 지뢰제거 즉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조사, 매핑(mapping), 표지, 제거
- 3) 재활 및 재통합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 4) 비축물 파괴
- 5) 대인지뢰 사용반대 옹호

참고: 위의 다섯 가지 지뢰행동 구성요소를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활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평가, 계획, 자원의 동원 및 우선순위화, 정보관리, 인적 기술개발 및 관리자훈련, 품질경영 및 안전하고 효율적 이면서 적절한 장비의 사용

3.178 지뢰행동센터(MAC), 지뢰행동조정센터(MACC)

Mine Action Centre (MAC), Mine Action Coordination Centre (MACC)

(2009)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존재할 경우 그것을 대리하여 전형적으로 지뢰행동프로젝트의 기획, 조정, 평가 및 경우에 따라 실행을 책임지는 조직. 국가지뢰행동프로그램에 있어서 지뢰행동센터 및 지뢰행동조정센터는 보통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작업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3.179 지뢰행동조정센터(MACC) Mine Action Coordination Centre (MACC)

지뢰행동센터(MAC) 참고

3.180 지뢰행동단체 mine action organisation

(2009)

지뢰행동의 프로젝트 또는 과제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모든 기구(정부, 군대, 기업 또는 비정부단체 및 시민사회)를 말한다. 지뢰행동단체는 주계약자,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또는 에이전트일 수 있다.

3.181 지뢰인지(認知) mine awareness

(2004)

지뢰위험교육(MRE) 참고

3.182 지뢰제거 mine clearance

특정지역으로부터 미리 정한 기준까지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을 없애는 일

3.183 지뢰탐지견 Mine Detection Dog(s) (MDD)

지뢰, 전쟁잔류폭발물 및 기타 폭발장치 등의 탐지를 위해 고용, 훈련된 개

3.184 지뢰안전지역 mine free

(2004)

특정깊이까지 지뢰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지역에 적용되는 용어. 지뢰오염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이나 국가에도 적용된다.

3.185 지뢰사건 mine incident

지뢰제거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과 관련된 사건
지뢰제거사고 참고

3.186 지뢰위험 mine risk

(2004)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의도하지 않은 폭발로 인한 인명, 재산 또는 환경의 물리적 손상의 가능성과 심각성(ISO Guide 51:1999[E])

3.187 지뢰위험교육 Mine Risk Education (MRE)

(2004)

남성, 여성과 어린이의 여러 취약점, 역할 및 요청을 따라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서 지뢰 및 전

생잔류폭발물에 의한 사고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활동. 여기에는 공공정보의 보급 및 교육, 연수, 지뢰관련 대민활동을 비롯한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도 포함된다.

3.188 지뢰위험축소 mine risk reduction

(2004)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상해 가능성 또는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행동 (ISO Guide 51:1999[E]의 채택)

참고: 지뢰위험축소는 지뢰제거, 울타리를 치거나 표시하는 일과 지뢰위험교육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3.189 지뢰표지 mine sign

표지체계의 일부분으로 배치되는 표지판으로, 지뢰가 존재함을 대중에게 경고하도록 만들어졌다.

3.190 지뢰지역 mined area

지뢰의 존재 또는 존재가능성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APMBC)

3.191 지뢰지대 minefield

일정한 형식 또는 형식 없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

3.192 모니터링 monitoring

(2009)

특정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이용하여 계속 진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 지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관리자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목표의 진행 및 달성 정도, 배정된 예산의 사용성과에 관한 추이를 제공한다.(OECD/DAC)

3.193 모니터링기관 monitoring body

보통 국가지뢰행동기구의 하나로 국가감독체계의 관리 및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

3.194 지뢰위험교육단체 MRE organisation

(2009)

정부, 비정부단체, 시민사회단체(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적십자 및 적신월사 등), 기업 및 군대(평화유지군 포함)을 포함하여 지뢰위험교육의 계획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단체. 지뢰위험교육단체는 주계약자,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또는 에이전트일 수 있다.

지뢰위험교육 하부단위라는 용어는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정보사업, 학교기반교육사업 또는 지뢰행동지역사회소통 프로젝트평가와 같은 하나 이상의 지정된 지뢰위험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인정된 기관의 일부를 말한다.

3.195 지뢰위험교육 협력자 MRE partner

(2009)

지뢰위험교육사업을 촉진, 수립 및 수행하기 위해 지뢰위험교육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지뢰피해 지역사회 내 기관 또는 단체

3.196 탄약 munition

폭발물, 추진제, 불꽃장치, 시동장치 또는 폭발물을 포함하여 군사작전에 사용하기 위한 원자력, 생물학 또는 화학 물질로 채워진 완전한 장치 (AAP-6)

참고: 일반적으로 탄약이라는 용어는 군사용 무기, 폭발물, 장비 등을 말한다.

[N]

3.197 국가기구 national authority

(2004)

비축물 파괴 상황에서, 이 용어는 각 나라에서 비축물 파괴의 규제, 운영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기구 또는 기관을 말한다.

3.198 국가지뢰행동기구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NMAA)

(2009)

지뢰피해국가에서 지뢰행동의 통제,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많은 경우에 부처연합위원회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유엔 또는 어떤 인지도 있는 국제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지뢰행동센터 또는 때로 국가지뢰행동기구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

3.199 비허용환경 Non-permissive environment

(2009)

인도적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인도적 도움의 요청이 있으나 일정동안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관

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인도적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규범 안에서 행하는 지뢰행동을 못하게 되는 작업지역 (허용적 환경의 반대말)

3.200 비점화 물질 non-sparking material

(2004)

공구, 돌에 부딪힐 때 또는 물질 자체가 단단한 표면에 부딪힐 때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3.201 비기술조사 Non-Technical Survey

(2013)

기술적 개입을 이용하지 않고 폭발물 오염의 존재, 종류, 분포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폭발물오염이 어디에 존재하며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가를 더 잘 식별하고, 증거제공을 통해 토지해제의 우선순위결정 및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이다.

[O]

3.202 운영분석 Operational Analysis(OA)

운영연구 참고

(2009)

운영과 관련된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과학적 기초를 가진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적용하는 연구분야

3.203 운영연구 operational research

운영분석(OA) 참고

3.204 산출(물) output

(2009)

지뢰행동평가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행동에 참여한 결과로 인해 산출된 상품, 자본재 및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개발과 같이) 성과물의 성취와 관련된 참여에 의한 변화도 산출물에 포함될 수 있다.

3.205 결과(물) outcome

(2009)

지뢰행동평가 상황에서, 이 용어는 참여에 의한 산출물의 가능한 효과 또는 성취된 단기효과와 중기효과를 가리킨다. 결과물은 참여의 효과성과 연관된다.

[P]

3.206 파티클 보드 particle board

(2009)

잘게 부순 나무 조각들을 합성하여 만든 합판으로, 지뢰제거기계로 토양 침투력을 시험할 때 세우는 가로 표지대에 붙이는 세로 보드로 자주 사용된다.

3.207 영구표지체계 permanent marking system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무기한으로 사용되는 표지체계(임시표시체계 참고).

3.208 허용환경 Permissive Environment

(2018)

인도적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인도적 도움이 필요하며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인도적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제인도법 시스템 안에서 행하는 지뢰행동이 일정기간 동안 허락된 작업지역 (비허용적 환경의 반대말)

참고: 국제지뢰행동표준 01.10의 6.2항의 인도적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표준의 폭발물 대응에서 지뢰행동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인도주의적 관심에서 시작된다. 표준과 그 적용을 인도적 대응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근본적 원칙인 인간성, 공정성, 중립성 및 독립성을 반영하는 일이다.

3.209 개인보호장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업무 중에 착용 또는 소지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모든 장비 및 의류

3.210 선행시험 pilot test

팀 형성, 데이터 수집, 보고, 관리 등 모든 조사프로젝트의 요소가 계획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의 개시에 앞서서 진행되는 과정

3.211 정책 policy

(2009)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정의하고, 조직이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행동의 규정, 기준 및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

3.212 적극적 조치 positive action

(2019)

작업수행자가 폭발물에 미치는 외부 영향을 방해, 이동, 안전, 파괴 또는 도입할 조치를 말한다.

참고: 여기에는 폭발물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X선 또는 기타 행위가 포함된다.

3.213 지뢰제거 사후평가 post clearance assessment

(2019)

지뢰행동의 생산성과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뢰행동의 계획, 우선순위결정, 실행 프로세스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제거작업 후의 토지사용을 모니터하고,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조사이며, 이 조사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지뢰행동의 결과 (지뢰제거가 완료된 토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식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214 지뢰제거 사후검사 post clearance inspection

(2004)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제거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거된 토지의 표본을 측정, 검사, 시험 또는 비교하는 과정을 말한다.

3.215 설계후 서비스 Post Design Services(PDS)

장비의 도입 후에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 또는 개조와 같은 추가 서비스

참고: 설계 후 서비스는 처음 도입계약 후에 변화되는 상황 및 요청에 대응하여 장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may).

3.216 예비개발 Preliminary Development(PD)

(2004)

완전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의 전 단계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찾아내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상세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계획, 설계, 공작

참고: 예비개발 동안에는 기술 사양과 운영소요 사이에 비교적 유연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should).

3.217 예비조사 preliminary study

기술적 가능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을 나타내는 연구

3.218 예비시험 pre-test

선택된 평가도구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초기의 프로세스

3.219 기폭장약 primer

탄피 또는 발화 장치에 장착되어 추진물질을 점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독립형 탄약

3.220 주체 principal

(2004)

요청받은 지뢰행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계약을 맺는 조직. 주체는 후원자,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를 대리하는 실행단체, 기업 또는 지뢰행동이 수행되기를 희망해서 그런 일을 위해 지뢰행동단체와 함께하는 어떤 조직도 될 수 있다.

3.221 우선순위설정 priority-setting

(2009)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고려하여 어떤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우선순위 설정은 지뢰행동의 모든 측면(지뢰위험교육, 토지해제, 비축물파괴, 옹호활동)에 적용된다.

3.222 조달 procurement

장비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승인되고 장비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 예비품 및 설계 사후보완(PDS) 제공을 지속하는 연구, 개발, 생산 또는 구매 절차

3.223 탐침 prodding

지표면 아래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지상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뢰제거 절차 중 한 가지.

굴호(堀壕,sapping) 참고

3.224 프로그램 programme

(2009)

개별로 운영할 경우 성취 불가능하거나 비용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프로젝트 및 계약에 대하여 이익창출을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총체

3.225 프로젝트 project

(2004)

양적, 질적 목표에 의해 확인된 유효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고유한 범위의 과제를 주어진 요건을 따라 비용과 시간의 제약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물질, 재정, 자원을 조직화하는 노력

3.226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2004)

프로젝트가 결과에 도달하는 프로세스

3.227 추진제 propellant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연소 폭발물질

동력을 가해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물질로서, 이것은 화학반응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가스, 액체 또는 화학반응 전의 고체일 수 있다. 화학 추진제는 대부분 탄약의 탄두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다. 추진제 고유의 물질이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진목적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여 화학가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고: 추진제는 또한 가스 발생기나 다른 것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3.228 방호수단 protective measure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ISO Guide 51:1999[E])

3.229 제5의정서 Protocol V

(2007)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5의정서

참고: 제5의정서에 따라 협약가입국 및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전쟁잔류폭발물(제3조)을 제거, 철수 또는 파괴하고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遺棄)(제4조)에 관련한 정보를 기록, 보존 및 전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민간인(제5조)과 인도주의 대표단 및 단체(제6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협약가입국은 다른 것들 사이에 무엇보다 우선 표지, 제거, 철수, 파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과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7조 및 제8조). 제5의정서는 2006년 11월 12일에 발효되었다.

3.230 시제품 prototype

가능한 한 최종설계 및 제작표준에 가깝게 제작된 장비, 부품 또는 부속품

참고: 시제품은 마지막 생산표준의 개선을 돕고 성능 또는 사양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3.231 근접검증 proximity verification

지역커뮤니티와의 면담에서 알려진 폭발물 위험지역을 관찰하는 활동

참고: 반드시 안전지역에서 관련 행동절차를 따라 관찰해야 한다.

3.232 대중교육 public education

(2009)

공공정보, 공식, 비공식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과정

참고: 대중교육은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운동적 접근법이다. 이것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교육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대중매체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 여성,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간에 교육기회의 진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지뢰문제인식의 홍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수단, 표어 및 자료의 적절한 채택이 요청될 수 있다.

참고: 비상상황에서, 시간 제약과 이용 가능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육은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다. 다른 상황에서는 대중교육은 지역사회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233 대중정보확산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

(2004)

남성, 여성, 어린이에게 알리거나 최신정보를 전하는데 사용되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정보. 그런 정보는 지뢰금지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위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프로젝트는 보통 위험축소에 관한 홍보를 포함하지만, 국가 지뢰행동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Q]

3.234 품질 quality

일련의 고유한 특성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ISO 9000:2000)

3.235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2005)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된다는 확신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 품질경영의 한 부분(ISO 9000:2000)

참고: 인도적 지뢰제거에서 품질보증의 목적은 지뢰제거에 대한 운영실천 및 운영절차가 타당하며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명시된 요구사항을 달성하는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내부의 품질보증은 지뢰제거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외부의 모니터링기관에 의한 외부검사도 실시해야 한다(should).

3.236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QC)

품질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춘 품질경영의 한 부분 (ISO 9000:2000)

참고: 품질관리는 완제품의 검사와 관련된다. 인도적인 지뢰제거의 경우에 제품이란 안전하게 제거된 토지이다.

3.237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QM)

품질에 관련된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맞추어진 활동 (ISO 9000:2000)

[R]

3.238 임의표본추출 random sampling

각 항목에 동일한 선택기회를 주는 절차에 의한 표준추출. 시험목적을 위한 지역을 선정하는 객관적 또는 공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3.239 래스터 데이터 raster data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가상의 셀 격자의 사용. 점 모양들이 하나의 격자 속에 개별적인 열과 행의 값으로 저장된다. 선은 연결된 일련의 셀로 식별할 수 있고, 면적은 모양을 구성하는 모든 셀로 구별할 수 있다.

3.240 RDX (1, 3, 5-triazacyclohexane)

(2004)

RDX는 많은 탄약제조에서 폭발물로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군사용 폭약이다. RDX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성질을 띤다. TNT보다는 낮지만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지닌다. RDX는 우발적인 폭발의 위험으로 인해 절대로 순정건조 상태로 취급되지 않는다. 폭발성 혼합물, 특히 플라스틱 폭발물의 구성요소로 사용된다.

3.241 합리적 예측오용 reasonably foreseeable misuse

(2004)

공급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과정, 서비스의 사용.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ISO Guide 51:1999[E])

3.242 식별파편 recognition piece

(2004)

금속 조각으로서, 이것은 금속탐지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시험품목 밑에 놓는 쇠 파편이다.

3.243 축소토지 reduced land (m²)

(2013)

위험의심지역 및 확인위험지역의 기술조사 시행에 따라 폭발물 오염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정 지역

3.244 참고점 reference point

경계표지

위험지역 바깥으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고정된 기준지점. 참고점은 하나 이상의 기준점을 찾기 쉽게 외관상 인식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hould).(예: 교차로 또는 교량)

참고: 국제적으로 이런 지점들은 종종 삼각점과 같이 사전 조사된 위치를 가리킬 때 측지점(測地學; Geodetic Point)이라고도 한다.

3.245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RDMS)

입력된 각 레코드에 대해 수많은 필드가 있는 단일 테이블이 아닌, RDMS는 여러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식별 코드를 사용한다. 사용된 코드는 데이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RDMS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과 서로 다른 레코드들에 대해 편집된 데이터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상세한 쿼리(질의)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3.246 연관성 relevance

(2009)

지뢰행동 평가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목표가 수혜자의 요구 사항, 국가의 필요,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및 후원자 입장과 일치하는 범위를 나타낸다.

3.247 신뢰성 reliability

장비, 부품 또는 부속품이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248 신뢰할만한 (지뢰행동) 정보 reliable (mine action) information

(2009)

지뢰제거작업 수행에 관해 국가지뢰행동조직이 수용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보

3.249 원격조치 remote action

(2019)

폭발물처리 작업수행자가 폭발물처리 제어지점을 벗어나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에 접근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

3.250 안전조치절차 Render Safe Procedure (RSP)

(2019)

수용할 수 없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방법과 도구를 폭발물에 적용하여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구성부품을 분리시키는 일

참고: 영구중립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여기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참고: 폭발물은 외부적 수단으로 인해 안전처리가 되고 나면, 여전히 취급하기에는 위험하더라도 더 이상 목표물의 수송 중에 터질 수 없기에 중립화되었다고 말한다.

3.251 잔류오염 residual contamination

(2016)

잔류위험을 야기하는 오염을 말한다.

3.252 잔류위험 residual risk

잔류위험은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및 지뢰제거작업을 통해 폭발물의 존재와 존재가능성을 식별,

확인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한 후에 남은 위험이다.

3.253 위험 risk

피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의 결합 (ISO Guide 51:1999[E])

3.254 위험분석 risk analysis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체계적인 이용 (ISO Guide 51:1999[E])

3.255 위험사정 risk assessment

위험성 분석 및 위험성 판단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과정(ISO Guide 51:1999(E))

3.256 위험평가 risk evaluation

허용 가능한 범위의 위험성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분석에 기반을 두는 절차(ISO Guide 51:1999(E))

3.257 위험축소 risk reduction

특정 위험과 관련된 발생 가능성, 부정적인 결과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

[S]

3.258 안전 safe

(2009)

위험의 부재.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고 정확하다.

참고: 탄약과 연관해서 안전이라는 용어는 퓨즈의 ‘안전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3. 259 안전대기기간 safe waiting period

(2019)

원격 또는 반(半)원격의 적극적 조치를 수행한 후에 접근 및 수동접근에 앞서 작업자가 기다리도록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대기시간

참고: “담금 시간(Soat time)”이라는 용어가 때때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3.260 안전성 safety

위험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의 축소 (ISO Guide 51:1999[E])

3.261 표본 sample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무작위로 뽑은 면적 1.0m² 또는 그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3.262 표본크기 sample size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표본 안에서 토지면적 1.0m² 단위의 수량을 말한다.

3.263 표본추출 sampling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토지의 일부 지역에서 시험을 위하여 전체지역의 대표로 뽑는 규정된 절차

3.264 표본추출계획 sampling plan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검사할 각 로트의 1.0m² 단위 토지의 수(표본크기 또는 표본크기의 시리즈)와 로트의 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기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계획(수용 및 거부수량)을 말한다.

3.265 냄새 scent

독특한 냄새

3.266 이차파편 secondary fragmentation

폭발사건에서, 본래 폭발물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의 파편

3.267 자폭장치 self-destruction mechanism

(2009)

탄약의 일차적 발동장치뿐만 아니라 그 장치가 내장된 탄약의 파괴를 강화하는 내장된 자동작동기계장치(확산탄금지협약)

3.268 자체무력화 self-neutralisation

지뢰에 부착된 장치로 인한 작용으로, 지뢰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취급하기에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지뢰에서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 (AAP-6)

3.269 반(半)원격 조치 semi-remote action

(2009)

폭발물 처리(EOD) 작업수행자가 폭발물처리 제어지점(CP)을 떠나 폭발물에 바로 근접하여 폭발물처리 도구를 배치하고 제어지점으로 돌아온 후에 원격으로 폭발물처리 도구를 작동시키는 일련의 적극적 조치

3.270 성·연령별 분류데이터 sex and age disaggregated data(SADD)

남성, 여성,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등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별 및 나이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모음. 위험상황의 영향을 받는 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나이와 성별 그리고 종족 또는 종교와 같은 다른 관련 요소들에 의해서도 분석되어야 한다.

3.271 특정지역 specified area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이를 대리하는 조직이 결정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제거작업이 합의되고 허락된 지역을 말한다.

3.272 특정깊이 specified depth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이를 대리하는 조직에서 지정 구역에 대해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토지의 깊이를 말한다.

3.273 특정품질제한(SQL) Specified Quality Limit (SQL)

인도적 지뢰제거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지뢰제거작업에서 요구되는 품질의 지표를 말한다.

참고: 표본추출 목적을 허용함에 있어서, 특정품질제한은 평균적 공정에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지정된 경계선이다. 그것은 생산자(지뢰제거단체)가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면서 소비자(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계약조직)도 허용 가능해야 한다.

참고: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제거의 경우, 특정품질제한은 장기적이며 꾸준한 공정이 실행된 후에 평균오염(평방미터당 나타나는 부적합 항목과 일치)을 나타낸다.

3.274 후원자 sponsor

장비실험의 후원자는 시험이 수행되도록 요청하는 기관이다.

참고: 국제기구, 국가지뢰행동센터, 기부자 또는 지뢰제거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3.275 표준 standard

재료,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가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의 정의로써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기술사양 또는 기타 정밀한 기준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합의서

참고: 지뢰행동표준은 본부차원과 현장차원에서 모두가 선호하는 절차와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지뢰행동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를 위해, 표준들은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should).

3.276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s)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선호되거나 현재 확립된 방법을 확인하는 지침

참고: 표준운영절차들의 목적은 작업 효과 및 안전성의 향상을 목표로 조직 내에서 인식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규율, 균일성, 일관성 및 공통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표준운영절차는 현지 요구사항 및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should).

3.277 표준운영절차 (Standing Operating Procedures(SOPs))

표준운영절차(SOPs) 참고

3.278 운영요구기술서 Statement of Operational Need(SON)

(2004)

사용자가 운영상 필요로 하는 것을 설명해놓은 문서

참고: 운영요구기술서는 필요성을 확인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후원자가 작성해야 한다(should).

3.279 요구사항기술서 Statement of Requirement (SOR)

선호하는 해결책을 기반으로 장비의 기대되는 특성 및 성능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한 문서

3.280 과업 및 산출 기술서 Statement of Tasks and Outputs(STO)

장비의 과업 및 핵심 특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요청되는 산출물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해결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요구를 광범위한 용어로 표현하는 문서

3.281 비축물 stockpile

지뢰행동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폭발물의 대규모 비축물량을 말한다.

3.282 비축물 파괴 stockpile destruction

(2009)

폭발물 비축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물리적 파괴 절차

3.283 자탄 submunition

모 폭탄에서 분리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폭탄(AAP-6)

산탄형폭탄(CBU), 포탄 또는 미사일 탑재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뢰 또는 폭탄

3.284 조사표지 survey marker

(2004)

지뢰제거 작업 중 표시 및 제거된 토지의 관리를 돕는 내구성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표지

3.285 생존자 survivor

(2012)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또는 확산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 여성 또는 어린이

3.286 생존자 지원 survivor assistance

피해자 지원 참고

3.287 위험의심지역(SHA) Suspected Hazardous Area(SHA)

(2013)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간접증거에 근거하여 폭발물오염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지역

3.288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2009)

지뢰행동평가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주요 지원이 완료된 후에 지뢰행동의 개입으로 인한 수혜의 지속을 말한다.

3.289 스위치 switch

(2019)

연결을 만들거나 끊거나 변경하는 장치

참고: 단일 스위치는 무장 및 점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290 체계적 조사 systematic investigation

(2013)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SHA/CHA)에 기술조사를 적용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서 이것은 주로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SHA/CHA) 내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지뢰 및 전쟁잔류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된다.

[T]

3.291 표적조사 targeted investigation

(2013)

기술조사를 하는 가운데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SHA/CHA) 내에서 다른 곳보다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 가능성이 더 높은 특정지역에서 수행하는 조사

3.292 작업식별번호 task identification number(ID)

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고유번호. 작업식별번호는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shall).

3.293 기술조사 technical survey

(2013)

폭발물 오염의 존재, 종류, 유형, 분포, 환경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조정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증거의 제시를 통해 폭발물 오염이 존재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더 잘 구분하고, 토지해제, 우선순위결정, 의사결정과정을 돕기 위한 일이다.

3.294 시험 test

절차를 통해서 하나 이상의 특성을 파악 (ISO 9000:2000)

3.295 시험평가(T&E) Test and Evaluation(T&E)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시험에 부합하는 활동

참고: 활동에는 절차와 표준의 형성 및 사용, 데이터의 축소 및 처리, 시험결과의 사정 및 평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규정된 표준 및 사양과 같은 기준에 위배되어 처리된 데이터도 포함된다.

3.296 시험장 test site

(2005)

지뢰탐지전의 운용인정시험을 목적으로 준비된 일련의 시험용 박스형 공간 또는 구분선이 있는 현장

3.297 도난방지책(柵) theft resistant

(2004)

폭발물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로 불법침입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구조물

3.298 타이머 Time

(2018)

일정시간 후에 작동하는 스위치의 유형

3.299 티엔티 TNT(2, 4, 6 Trinitrotoluene)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용 고성능 폭약의 일종. 티엔티(TNT)는 충동, 마찰, 충격, 정전에너지에 대하여 매우 안정적이며, 흡습성이 없고, 비교적 덜 민감하다. 티엔티(TNT)는 지뢰 및 탄약에서 사용되는 가장 널리 퍼진 폭약류이다.

3.300 허용가능위험 tolerable risk

현재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수용되는 리스크 (ISO Guide 51:1999[E])

3.301 실험 trial

부품, 장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개별적인 결과를 체계적 방법으로 구성한 시험 시리즈

3.302 삼각측량 triangulation

(2009)

지뢰행동평가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사정평가를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이론, 정보원 또는 정보유형 또는 분석 유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원천은 반드시 사람일 필요가 없고, 문서, 지도, 사진, 위성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3.303 전환점 turning point

(2004)

위험지역 둘레에 하나의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지면의 고정지점. 전환점은 분명하게 표시 및 기록해야 한다(shall). 향후 영구적 참조를 위해 모든 전환점 표시는 금속물체를 사용해야 한다(should).

[U]

3.304 불발소형폭탄 unexploded bomblet

(2009)

분배용기에서 분산, 방출 또는 분리되어 의도한 대로 폭발하지 못한 소형폭탄(CCM)

3.305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UXO)

뇌관 및 신관이 장착되고,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폭발물. 이것은 점화, 투하, 발사, 또는 투발시켰지만 작동오류, 설계오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폭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3.306 불발자탄 unexploded submunition

(2009)

확산탄으로부터 분산, 방출되거나 또는 분리되었지만 계획된 대로 폭발하지 못한 소폭탄(CCM)

3.307 단가 unit rate

(2004)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가격을 매긴 작업 항목 및 수량에 대해 합의하고 동의한 요금

3.308 유엔지뢰행동조직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2004)

모든 지뢰관련 활동을 위한 유엔시스템 내의 구심점

참고: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사회에서 지뢰행동표준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유엔사무국 내의 부서이다.

참고: 유니세프는 유엔지뢰행동조직의 전 업무조정지침에 따라 지뢰위험교육을 위한 구심점이 된다.

3.309 사용자 user

(2009)

장비를 운용할 남성, 여성 또는 조직

참고: 지뢰행동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는 또한 ‘현재와 미래에 국가, 기업 및 NGO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해 알려진 공식적인 의견들의 복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

[V]

3.310 인준 validation

검증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검증 행위

3.311 벡터 데이터 vector data

점, 선, 면 등 세 가지 기본적 그림의 기본적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X, Y좌표사용

참고: 점(마을, 사건장소 등)은 X, Y 좌표에 위치들을 단독으로 표시한다. 선(도로, 강 등)은 X, Y 좌표에 점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면 또는 폴리곤(호수, 경계 등)은 선으로 둘러싸인 경계선 내부의 표면으로 X, Y 좌표에 표현된다.

3.312 검증 verification

특정요건의 충족을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통해 확인 (ISO 9000:2000)

3.313 피해자 victim

지뢰의 사용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존재와 관련된 행위나 태만으로 인하여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상처 및 경제적 손해, 기본권의 상당한 손상을 당한 개인적, 집단적 사람. 피해자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은 개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참고: 피해자지원의 상황에서, 이 용어는 폭발물 희생자와 근접해 있는 피부양자를 비롯하여 이웃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존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3.314 피해자지원 victim assistance

생존자지원 참고

(2004)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원조, 구호, 위로 및 지원을 말하며, 이는 그들의 상처로 인한 즉각적, 장기적, 의학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315 희생자 이용방식 Victim Operated

(2018)

희생자의 존재, 근접성, 접촉 또는 활동에 의해 작동하도록 고안된 스위치 유형으로, 이 장치는 한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3.316 방문자 visitor

(2004)

국제지뢰표준의 목적에 따른, 지뢰제거단체의 일원도 아니며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인정한 지뢰 제거인력도 아닌 개인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인정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뢰제거단체는 비고용인의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should).

[W]

3.317 백린 White Phosphorous (WP)

공기와 접촉하면 연소되어 연막을 발생시키는 화합물(무기인산염은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심각한 대인 피해를 일으킨다).

3.318 작업장 workplace

고용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체재하거나 출입하고 고용주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모든 장소 (ILO R164)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1	2004.12.1	1. 포맷 변경 2. 부 텍스트 편집 변경 3. 실질적인 변화 1) 새로운 정의: 유기폭발물(AXO), 합의; air sampling machine, 감사, Bomb Live Unit(BLU), 완충지대, 유럽표준화위원회 워크숍합의서(CWA), 계약, 계약자, 실비정산계약, 지뢰제거요원, 지뢰제거현장, 파괴조직, ductility, 교육, emanation, 전염병(epidemic disease), filter box, filter cartridge, filter container, 고정가격계약, 신축성 있는 튜브 또는 파이프, 불가항력, 지면준비, ground processing, 피해사건, 위협상황, 역사적 검증, IATA, I/m, I/V, 무영향, 검사, LIS, 합의서, mechanical application, 지뢰행동조정센터(MACC), 지뢰행동조직, 지뢰인지, 지뢰안전지역, 지뢰위험, 지뢰위험감소, mine safe, Mine Threat Level(MTL), 지뢰위험교육기관, 지뢰위험교육 협력자, 국가기구, positive, negative and blank filters, 지뢰제거 사후검사, preventative maintenance, 주체,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젝트관리, 제안, 대중정보확산, 격리, 합리적 예측오용, 식별파편, 신뢰할만한(지뢰행동) 정보, s/c, steel, target substance, tender, tender process, 시험장, 도난방지책, 단단함(항장력), 단가, village demining, 방문자, weather resistant, 백린(WP) (72정의)

		2) 삭제된 정의: 전문가 의견, mechanically-assisted clearance, 대중정보 3) 수정된 정의: 인증, area reduction, 기준표시, 박스, 브리핑지역, burning ground, 취소지역, 제거된 지역, 지역사회소통, 통제지역 또는 통제지점, 중대부적합, 지뢰제거사, 지뢰제거예하조직, 폭파구역, 파괴, 탐지, 폐기장, 훈련, 지뢰행동종합평가(GMAA), 건강, 검사,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사건(참고용으로 변경), 비활성, 중간지점, 면허, 탄약처리, 탄약고, 지뢰행동, 지뢰위험교육(MRE), 감독, 비점화 물질, 예비개발(DP), (must를 should로 바꾼 것 포함), 품질보증(QA), 운영요구기술서(SON), 표시표지, 생존자, 기술조사, 위험, 전환점,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sable area, 피해자, 피해자지원
2	2005.7.23	1. 제 1 항, 적용범위로 변경 2. 제 2 항, 새 하위 조항 n) 3. 새로운 정의: 전투지역제거(BAC), 유럽표준화기구(EN), 전쟁잔류폭발물(ERW) (3개 정의) 4. 삭제된 정의: air sampling machine, buffer zone, ductility, emanation, epidemic disease, filter box, filter cartridge, filter container, flexible tube or pipe, 역사적 검증, i/m, i/v, IATA, mine safe, mine threat levels, organiser, positive, negative and blank filters, preventative maintenance, 격리quarantine, s/c, target substance, toughness, weather resistance, undesirable scent, usable area (25개 정의) 5. 수정된 정의: 유기폭발물(AXO), 승인, 박스, 조각장, 계약자, 다이 나이트로톨루엔, 연습탄, 폭발물처리(EOD), 이양, 지뢰위험교육(MRE), 품질보증(QA), RDX(1, 3, 5-triazacyclohexane), 시험장
3	2006.12.1. 2007.12.1	1. 사소한 변경/서문의 제1 및 제2 항에 추가 2. 새로운 정의: 환경, 환경적 관점, 환경영향, 환경관리시스템(EMS), 환경정책, 성 주류화, 의심위험지역(SHA)(7개 정의) 3. 제거된 정의: ground processing, fragmentation hazard zone, 기계응용mechanical application, 지뢰위협(mine threat), 위험 (5개 정의) 4. 수정된 정의: 감사, ‘평가’에 대한 추가 정의 5. ‘전쟁잔류폭발물’ 용어 포함 6. 용어집 전체에서 ‘위협’이라는 용어 제거 7. ‘유럽표준화위원회 워크숍합의서’ &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정의 수정 8. 새로운 정의: 전장,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환경영향평가, 진입장비, 장비, 기계지뢰제거 작업, mechanical demining unit, 기계공구 9. 제1조 ‘적용범위’에 추가된 메모-수정 및 새로운 정의에 날짜 포함
4	2009.6.30	1. 새로운 또는 변경된 정의는 단어나 용어의 괄호 안에 ‘2009’ 라고

		적혀 있음 2. 정의 제거: alienation, area reduction, 개발, 폭발, 교육, 지침(guide), level 2 survey, 제안, pure research, reduced area, 연구, 굴호, 강철, ender, tender process
5	2012. 8.1	1.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IATG)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2. 생존자와 피해자 정의 업데이트 3. 삭제된 정의: 후원자, mechanical demining unit, 표준(반복된), temporary marking system 4. Minor typographical amendments
6	2013.5.8	1.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신규 토지해제 영향 검토 2. 정의 수정: 의심위험지역(SHA), 위험확인지역(CHA), TS, NTS, 제거, LR, 모든 합리적인 노력, 표적조사, 체계적 조사, 취소지역, 제거된 지역, 탄약고 3. 새로운 정의: 비오염확인 토지, 급조폭발물(IED) 4. 삭제된 정의: DHA 5. 제목과 머리글에 포함된 개정 조항 번호
7	2014.8.11	1. 수정된 정의: 잔류위험 2. 새로운 정의: Command Activated IED, 급조폭발물대응, 사제폭발물, 급조폭발물처리, Time Activated IED, Radio Controlled IED, Pressure Plate IED, 추진제, Vehicle Borne IED, Victim Operated IED
8	2018.7.27	1. 적용범위 업데이트 2. 수정된 정의: 대인지뢰, 급조폭발물, 급조폭발물대응, 제거, 폭발물 3. 다음 정의에서 ‘지뢰/전쟁잔류폭발물’을 ‘폭발물’로 대체: 모든 합리적인 노력, 취소지역, 지역사회소통, 위험확인지역, 영향, 비기술조사, 근접검증, 축소확인(reduced), 잔류위험, 이차파편, 기술조사 4. 새로운 정의: 대전차/대차량지뢰, 기폭스위치, 타이머, 희생자 이용방식, 잔류오염 5. 정의 제거: Command Activated IED, Time Activated IED, 무선제어 Radio Controlled IED, Pressure Plate IED, 추진제, Victim Operated IED
9	2019.2.15	1. 새로운 정의: 인도적 원칙, 스위치, safe waiting periods, 원격조치, 반(半)원격조치, 적극적 조치 2. 수정된 정의: 안전조치절차, 지뢰행동 3. 정의 제거: neutralise